해양수산부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

수신 관내 해운대리점
(경유)
제목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 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 알림

1. 「원양산업발전법」 개정('24.10.25. 시행)으로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입항 전 24시간 전에 어획물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.

2. 다만, 운항시간이 24시간 미만의 근거리 선박의 경우, 「원양산업발전법」('24.10.25. 시행) 제14조제1항의 적용(입항 24시간 전에 입항신고)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유예 ·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(신고시간) 입항신고시간을 '24시간 전'에서 '전출항지 출항 전'으로 예외적 허용

나. (대상선박) 러시아 극동지역, 중국, 일본, 대만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, 여객선, 산적화물선, 어획물운반선*

* 근거리를 정기 운항하는 어획물운반선에 한정

다. (시행기간) 2024년 10월 25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. 끝.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장인

주무관 김윤정 지원장 2024. 10. 24. 조병열
협조자
시행 부산지원-6477 (2024. 10. 24.) 접수
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30번길 8 / http://www.nfqs.go.kr
전화번호 051-602-6035 팩스번호 051-602-6088 / yun301@korea.kr / 대국민 공개